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합508982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최윤석, 최주리

피 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황인용, 최윤아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산정에 연 12% 비율의 적용을 구한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792,836주를 보유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9. 1. 30. 피고 및 피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미합중국 소재 법인 F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E 발행주식 792,8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3,067,000,000원에, F로부터 F 소유의 E 발행주식 1,000,001주를 66,93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체결일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2,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이 사건 주식 중 179,284주에 관한 주권을 에스스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거래의 종결)

(1) 본건 거래의 종결(이하 "거래종결")은 제3조에서 정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을 면제한 경우를 포함) 되는 것을 전제로 2019. 3. 22.(이하 "거래종결일")에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장소에서 행하기로 한다.

(2) 거래종결시 양도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a) 양수인이 제(3)항 제(a)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대상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실물 일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상주식을 양도한다. 다만, 양수인이 요
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증권회사 계좌에 대상주식을 계좌대체하는 방
식, 또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주식양수도 계약 및 양도통지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3) 거래종결시 양수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a) 양도인이 제(2)항 제(a)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양수도 대금 입금 계
좌(또는 양도인이 지정하는 양도인 명의의 계좌)로 양수도대금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금 일천팔십억원(₩108,000,000,000)을 즉시 인출가능한 자금의 형태로,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송금한다.

제3조(거래종결 선행조건)

(2) 양수인이 본건 거래를 종결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또는 양수인
에 의하여 포기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b) 본 계약 체결일과 거래종결일 현재 제4조(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에 정한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이 중요한 측면에서 모두 정확하고 진실될 것.

제4조(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양도인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종
결일 현재(또는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점이 있는 경우 해당 시점 현재) 다음 각호에 정
한 사항이 모두 정확하고 진실함을 각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양도인과 대상주식에 대한 진술 및 보증

(e) 대상주식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었고,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종결일 현
재 양도인은 대상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포함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주식에 관한 담보, 제한 기타 일체의 부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6조(확약사항)

(1)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 전까지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b) 양도인은 본 계약 제2조 (1)항 (e)호에 기재된 G의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거래종결 전까지 대상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증여 또는 달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제안을 하거나 협상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7조(해제)

(1)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거래종결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해제 사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본 계약 제3조 (1)항 (e)호에 기재된 G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며, 그 우선매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양도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a)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육십(60)일]이 경과한 날까지 본건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b)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 합의, 확약 또는 의무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십(10) 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완전히 시정하지 못하거나 시정을 거부한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즉시 계약해제가 가능함).

(c) 상대방 당사자 또는 대상회사, 계열회사들에 대하여 (i) 관련 법령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관할법원에 제기된 경우, (ii) 워크아웃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iii) 발행어음 등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2) 본 계약이 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손해(실사비용, 법률비용, 분쟁해결비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입은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 제1조 제(3)항에 따라 에스스로 된 대상회사의 주식 179,284주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제1조 제(3)항의 계약금은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제1조 제(3)항의 에스스로 된 주식 179,284주는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2) 원고는 2019. 1. 3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9. 1. 30. 법무법인 HI 변호사를 수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관한 에스스로 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스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I 변호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에스스로 계약 중 수익자인 원고의 인출 조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수익자의 인출 조건

(1)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익자는 대상주권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2019. 3. 22. 본건 거래의 거래종결일에 거래가 종결되는 경우
2. 본건 거래 제7조 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귀책사유로 본건 거래가 해제되는 경우
3. 위탁자가 동의하는 경우
- 4) 원고는 2019. 4. 15.경 I 변호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가압류 결정 및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

1) 피고의 소수주주들인 J 등 62인은 2019. 2. 8.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9,350,305,97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9. 2. 22. 가압류 결정(이 법원 2019카단802356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이 사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처리 방안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9. 3. 22. 피고에게 ‘2019. 3. 8.로부터 10 영업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약금 1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e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 제한 기타 일체의 부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가압류 등 일체의 부담을 제거할 의무(이하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라 한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해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8.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시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3. 22.자 내용증명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식 담보제공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e호의 진술 및 보증, 제6조 제1항 제b호의 확약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 진술 및 보증, 확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21. 3.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1) 피고 주장 요지

가) 진술 및 보증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주된 동기는 E의 경영권 취득에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경영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주식의 양수가 가능하다면 양도대상주식의 수량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은 이 사건 계약상 양수도대금의 약 16%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일부를 가압류해방공탁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키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술 및 보증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진술 및 보증 위반의 기준시점인 '거래종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진술 및 보증 위반 여부는 실제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19. 3. 22.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모두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행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진술 및 보증 위반 여부의 기준시점이 되는 거래종결일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거래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불안의 항변권 행사 주장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 제a호 및 제3항 제a호에 따르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자신의 채무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통지는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자금조달능력이 악화되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선이행의무인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는 부적법하다.

2)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진술 및 보증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e호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담보, 제한 기타 일체의 부담'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였고, 제7조 제1항 제b호에 따르면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 및 보증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약정해제권 발생사유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e호에 정한 진술 및 보증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에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주식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양도대상주식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로서는 위 가압류 결정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이 19,350,305,975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도인인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가 이 사건 계약상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가 그 잔금 일부를 가압류해방공탁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해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수도대금 잔금을 가압류해방공탁에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먼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가압류 등 부담을 해소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가압류 등 부담이 없는 완전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는 양도인인 피고의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계약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e호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체결일 현재 및 거래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 제한 기타 일체의 부담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였고, 제3조 제2항 제b호에 따르면 '계약체결일 현재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할 것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e호는 양도인인 피고가 ‘계약체결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식에 일체의 부담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종결일로 예정한 2019. 3. 22. 현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b호는 거래종결일 이전에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기간 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거래종결일 이전에 진술 및 보증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발생 가능한 변동위험을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부담하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에게 그 위험을 이전시키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호가 오직 거래종결 시점에만 양도인에게 진술 및 보증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경우, 거래종결일 이전이라도 상대방의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b호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나아가 다른 진술 및 보증 조항과 달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e호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양도인이 오직 거래종결 시점에 진술 및 보증 사항을 준수하기만 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본건 거래의 종결은 제3조에서 정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2019. 3. 22.(이하 ‘거래종결일’)에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장소에서 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그 거래종결일을 2019. 3. 22.로 지정하되, 단지 거래종결장소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추후 정하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반면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상 ‘거래종결일’이 고정된 날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날이라고 해석할 경우, 양도인이 의도적으로 양도대상주식에 설정된 담보 등 부담을 해소하지 않고 나아가 양수인과 구체적인 거래종결시점에 관하여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고 거래종결일이 도래하지 않으며, 진술 및 보증 위반의 판단 기준시점이 되는 거래종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인에게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a호가 거래종결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계약체결일(2019. 1. 30.)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2019. 3. 31.)까지도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상 거래종결일이 2019. 3. 22.로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예정한 계약종결일(2019. 3. 22.)을 지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까지도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를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지, 이 사건 계약 제2조 등의 명백한 문언에 반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로 거래종결일을 지정하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1) 먼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 또는 선이행관계에 있는지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 제b호는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할 것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 제a호는 거래종결시 양수인의 의무로 잔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는 양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조 제e호에 따라 진술 및 보증한 사항으로, 원고가 거래종결시 부담하는 의무인 잔금지급의무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9. 2. 7. K로부터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따른 기소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요구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9. 2. 1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그 주식거래가 정지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조달을 위해 권면액 40,000,000,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30,000,000,000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였다가, 2019. 3. 15. 위 각 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일을 기존의 2019. 3. 15.에서 2019. 5. 31.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한 사실, ④ 원고는 2019. 3. 21.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일이 변경된 2019. 3. 15.경 또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2019. 3. 21.경에 이르러서는 경영상태 내지 자금사정의 악화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해소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이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9. 3. 22.자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제 통보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b호는 양도인인 피고의 확약사항으로 ‘거래종결 전까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증여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한 제안을 하거나 협상을 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 제b호는 상대방 당사자가 위 확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를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20년 상반기 무렵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 중 570,000주를 사채원리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b호의 확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제7조 제1항 제b호에 정한 약정해제권 발생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의 위 확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21. 3. 10.자 준비서면 부분이 2021. 3.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그로부터 10 영업일인 2021. 4. 1. 이내에 앞서 본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위 시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2,0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잔금지급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9. 3. 22.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핑계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2019. 4. 15.경 임의로 에스스로 된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받아감으로써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원고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이 계약이 해제된 이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20. 4. 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0. 5. 11.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c호에 정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21. 5.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해제되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위 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이 사건 주식 담보제공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21. 3. 10.자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1. 4. 1. 무렵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21. 4. 1. 이전에 원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2021. 4. 1. 이전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가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인 이 사건 가압류 해소의무 내지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두고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도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 및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양수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원고가 계약해제를 통보한 뒤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임의로 인출해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주권의 임의 인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2021. 3. 10.자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1. 4. 1.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약금 1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인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1)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제536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주권 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나, 위 청구에는 그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한편 피고는 위 법정이자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피고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형이라 할 것이므로, 상사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배온실, 판사 구현정

별지

주식종류 : 주식회사 E 의 보통주

순번	번호	권종	수량	소계
1	L	100,000	1	100,000
2	M N	10,000	7	70,000
3	O P	1,000	9	9,000
4	Q R	100	2	200
5	S T	10	9	90
합계			28	179,290

1)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